

안양시 공무원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 2006. 6. 13 훈령 제480호
일부개정 2020. 1. 31 훈령 제706호(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일괄
정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양시 소속 공무원과 안양시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1. 31>

제3조(직무관련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피신고자
2. 신고자 보호·보상과 관련한 요구자
3.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 사람
4. 안양시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업무수행 등으로 재산상·신분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

제4조(직무관련자와 골프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행성 오락금지) 공무원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무관

안양시 공무원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 규정

런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반시의 조치) 이 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훈령 제706호, 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 고 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 석 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 용 부 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년 월 일

위 신고인

㉠

